### 2-1 사업 개요

### 가. 개 요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류: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 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권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나. 추진경과

- 2003. 9.18 : 청소년증 발급 훈령 제정(문화관광부)
- 2003. 9.25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한국조폐공사)
- 2003.10.15 : 청소년증 시범발급 실시(서울, 대전)
- 2004. 1. 1: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증 발급 실시
- 2004. 2. 9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근거 마련)
- 2005. 2.10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 2007. 5. 1 : 청소년증 전산화발급 전국실시
- 2008. 8. 1 : 청소년증 발급 알리미 제도 시행
- 2010. 1. 4: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발급시스템 변경
- 2011. 6. 1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3.12.17 : 청소년증 카드발급 약정체결(여성가족부 한국조폐공사)
- 2014. 6.19 : 청소년증 수령방법(등기 또는 신청기관 방문 수령) 선택 가능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4.12.30 : 청소년증 대리인 발급신청 가능 및 신규 발급 신청기관 전국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6. 9. 1 : 청소년증 기능확대를 위한 MOU체결(여성가족부 한국조폐공사)
- 2017.1.11: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2017.4.19: 청소년증 분실(철회)신고 기능 개설
- 2017.7.14: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2018. 7. 4.: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한 청소년증 분실 신고, 분실 철회,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시
- 2024. 1. 1. : 청소년증 발급사진 규격 변경(3.5cm×4.5cm) 및 대리신청 자격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다. 기 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 (e청소년) QR코드를 탑재하여 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 라. 추진체계

기 선계계	
추 진 주 체	기 능 및 역 할
여성가족부	o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o 청소년 우대정책 및 청소년증 발급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보건복지부	o 청소년증 발급 시스템(행복e음) 운영
지방자치단체	<ul> <li>관내 청소년 우대 정책 추진 및 청소년증 관리</li> <li>청소년증 발급신청, (재)발급·교부</li> <li>청소년증 발급·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담</li> </ul>
한국조폐공사	o 청소년증 제작 및 발급현황 관리 o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SMS) 관리
교통카드사업자	<ul> <li>전국호환교통카드 서비스 제공</li> <li>교통카드 충전·환불 사후 관리</li> <li>교통카드 제작 지원 및 사후 관리</li> </ul>

### 2-2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

### 가. 유효기간: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19세가 되기 직전의 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이기는 하나, 발급소요기간(3주 정도) 및 발급 후 실제 사용 가능기간을 참조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 나. 주요 내용

구 분	내 <del>용</del> ('24.1.1. 개정)
	■ 청소년 본인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신청인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 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ul> <li>*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li> <li>0 8세 이하 또는 19세 이상인 자</li> <li>0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li> <li>0 외국인</li> </ul>
신청방법	■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 식 <청소년증 (재)발급신청 서>	■ 신청인(본인) - 초·중·고 재학 여부 등 선택 ■ 대리신청인: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 교통카드 기능 - 신청서 작성 당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별도로 교통카드 기능만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교통카드 기능 추가를 위해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발급신청 철회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당일(23시까지)에만 가능, 이후 재발급 필요 - 원하는 경우 교통카드명(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하여 기재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청소년증 업무처리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비 용	■ 무 료 - 단, 등기수령 선택 시 등기우송료(3,820원)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발급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 * 청소년증 발급 단가:비교통 4,700원, 교통 6,500원

### 다. 신청 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대 리 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신청인 사진(3.5cmx4.5cm)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도)
	<ul> <li>■ 대리인 증명 서류 (예시)</li> <li>• 공통 : 대리인 신분증</li> <li>•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li> <li>•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li> <li>•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         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li> </ul>

### 라. 수록사항

청소년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한, 발급일, 발급기관명을 수록

### 마. 관계기관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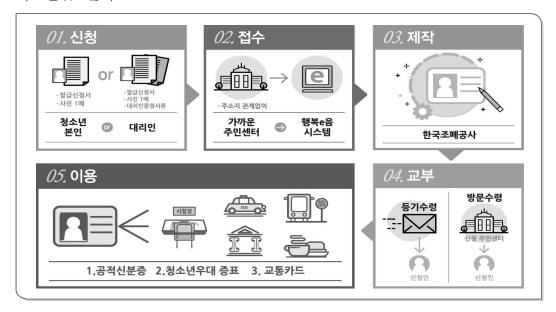
### ① 주민센터

-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신청서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발급 신청
- (방문수령 선택 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신청기관 방문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후 교부
-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요금을 수령하여 접수 즉시 건별로 입금 원칙(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 계좌번호/예금주: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 ② 한국조폐공사

- 방문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지 시·군·구로 청소년증을 배송
- 등기수령인 경우 제작 후 신청인의 등기수령 주소로 배송의뢰(우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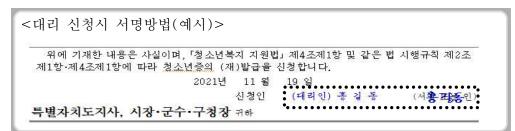
### 바. 발급 절차



### (1) 신 청

- 청소년 본인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를 가까운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 단, 14세 미만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제7호)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사진 요건(3.5cm×4.5cm)
  -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 읍·면·동장은 제출받은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진의 규격(3.5cm×4.5cm)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은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본인의 변모,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 보기 곤란한 사진
- 스티커, 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그 밖에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가발 착용,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는 사진 등)

- 대리인인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진 규정은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
  -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증명서류 제출 생략 가능
- 대리 신청 시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상의 서명(또는 인)은 대리인 이름으로 하며, 대리인임을 명시하여야 함



### (2) 접 수

- 청소년증 발급을 신청받은 공무원은 신청인(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
  - 주민센터 등 발급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교통카드 기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지역, 가맹점 등 상세히 안내하고,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알려야 함(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이므로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대리 신청의 경우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 신청시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재직 증명서 등
- 담당 공무원의 착오나 소홀로 타인에게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발급받으러 온 신청인에 대하여는 철저히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 당일까지만 가능하므로 청소년의 이름, 주민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
  - 업무처리 부주의로 동명이인 청소년증 오신청, 개인정보 유출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본인 확인 방법(예시)>

- o 청소년 본인이 신청한 경우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부착된 사진과 청소년의 얼굴 일치 여부 확인
  - 관계공무원이 해당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어보고 행복e음시스템에서 조회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 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 추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학교선생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등 이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청소년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
    - ※ 공통 : 대리인의 신분증
    -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 확인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등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제한된 대리인의 청소년증 대리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청소년과 대리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 허용하지 않음
    -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재직증명서 등
  - 대리인 신분 및 해당 청소년의 관계가 확인되면 대리인이 제출한 발급신청서와 행복 e음시스템 등으로 조회된 내용의 일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상의 다른 세대원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등 추가적인 확인 가능

- 청소년증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소년증이 교부되기 전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발급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 (3) 제 작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청소년이 신청·접수한 청소년증 관련 자료를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한국조폐공사에 제작 의뢰
- 시·군·구청장은 한국조폐공사에 청소년증 제작비용 지급
  - ('24년 단가) 기본형(비교통) 4.700원, 확대형(교통) 6.500원
  - 발급일자로부터 1년 이내 교통카드 불량으로 재발급 신청 시:한국조폐공사 부담

### (4) 교 부

-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청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작성하고, 교부일과 수령자의 서명을 받은 후 교부하며,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
  - ※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만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재 항목(수령자, 서명 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교부 이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교부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분실신고가 진행되지 않는 등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부 처리 필요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의 경우, 교통카드 사용 전에 청소년할인 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이 적용됨을 반드시 고지
- 청소년이 읍·면·동장에게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발급된 청소년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송부
- 읍·면·동장이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

- 시·군·구에서는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청소년증을 인수한 즉시 해당 읍·면·동에 인계
- 읍·면·동에서는 시·군·구로부터 인수한 청소년증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
- 청소년증을 교부한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 청소년증 대리수령 범위>

- 동일 세대원(직계 혈족).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사. 청소년증 재발급

### (1) 재발급 사유

- 청소년증의 분실이나 훼손
- 교통카드 불량
- 기본형 이용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 개명, 사진 등 기재사항 변경 등 ※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청소년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 서류 첨부

### (2) 재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세부 절차는 신규발급 신청 절차와 동일
- 청소년증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증을 첨부하여야 함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이용.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아. 분실신고(철회)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www.bokiiro.go.kr,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자:본인 또는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 신청인과 동일)
- 절차
  - (신청권자) 분실신고서 작성·제출 → (담당공무원) 행복e음시스템 입력
    - ※ 청소년증 분실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청소년증 분실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고,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만 작성·제출할 수 있음
- 재발급 신청
  - 청소년증 분실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 절차에 따라 진행
- 유의사항
  - 철회 신고:분실신고된 건에 한하여 철회신고 가능
  - 분실신고 수정:최초 등록한 읍·면·동에서만 가능
    - ※ 분실신고 후 청소년증을 습득한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철회신고 가능

### 자. 청소년증 파기

-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 청소년증을 파기해야 함(시·군·구에서 취합 하여 파기)
  - 훼손 또는 교통카드 불량, 기재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재발급을 하는 경우 기존 청소년증
  - 분실 등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거나 발급된 청소년증에 대하여 수령 안내를 통지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청소년증

### 차. (재)발급 관련 비용 처리

- 방문수령 시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에서 부담
    - ※ 한국조폐공사에서 매월말 기준으로 계산서 청구(건당 발급비:기본형 4,700원 / 확대형(교통) 6.500원, 우송료: 중량 기준)
- 등기수령 시 (붙임4 정산방법 참고)
  - 발급비용은 주소지 시·군·구 부담. 등기비용은 신청인 부담
    - ※ 발급비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시·군·구에 청구
    - ※ 등기수령 비용(우송료 3.820원)은 신청인에게 수령하여 담당자가 송금 처리

- ※ 신청인이 등기수령을 선택하였으나 수령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반송됨
- ※ 온라인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며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비용이 우정사업 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 등기수령 선택 시 처리방법(붙임4 참고)
  - 신청인이 등기수령 선택 시 신청지 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3,820원 수령
  - 신청건별 접수 후 즉시 이체 원칙이나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 계좌번호/예금주: 312884-01-006047 / 대전대덕우체국
    - \* 송금인명:(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정산문의: 대전대덕우체국 우편영업과(042-930-2430)
  - 주소지로 등기수령 비용 이체할 필요 없이 신청지 주민센터에서 모두 처리

### 카. 행정사항

- (1) 사용상의 유의사항을 교부 시 안내(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청소년 할인등록을 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2) 청소년증 위·변조, 부정사용 등 인지 시(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준용)
  -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그 직무는 공무원의 처리하는 직무만을 뜻하며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 (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 신청인이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초·중·고 재학하지 않음'에 체크한 경우
  - 정보연계 관련 절차는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별표 4] 참조
  - 청소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유선 1388, http://www.kdream.or.kr)에 연계
    - \* 2024년 청소년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붙임 3] 서식

### (4) 기 타

- 청소년증 발급시스템
  - 업무권한 부여절차 : (시·도, 시·군·구) 청소년 업무 주무과장→시·군·구 업무 담당자 및 읍·면·동장→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발급은 「행복e음」 또는 워드(한글, MS워드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 및 출력 가능
    -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 시 반드시 사진 하단에 간인을 날인하고, 투명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함(전산으로 출력한 확인서도 동일하게 적용)

### ○ 청소년증 단체발급

- 청소년증 개별 신청·수령 등에 따른 번거로움 완화를 위해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 단체발급 신청 가능
- ①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수요를 조사하여 10건 이상인 경우 단체발급 추진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추가 준비사항, 신청 가능 여부 등 판단 필요
  -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학교 밀집 지역의 경우 특정 주민센터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②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는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하고,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하여 주민센터에 제출
  - ※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서는 청소년의 의사, 본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시 공문 등 첨부(지자체에 따라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확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

-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등록 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
  - ※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변경된 주소 기재 요청 시
    - 행복e음시스템 등을 통해 주소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청소년증 뒷면에 주소 변경일자, 변경된 주소 등 기재

### 가. 목적

○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카드 기능을 청소년증에 추가하여 대중교통 및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 활성화

### 나. 유의사항

- 교통카드 사용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교통카드 수령 후 반드시 할인등록을 하도록 안내. 하지 않을 경우 대통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됨
-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해야 함. 소급하여 공제 불가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당부.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함

구	분	레일플러스 <b>Rail+</b>	원패스 Onepass	캐시비 cost
사- 지		<b>전국에서 가능</b>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b>전국에서 가능</b>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b>전국에서 가능</b> (사용 불가능 지역 제외)
사- 불기 지 <sup>9</sup>	누능	- 경북 (군위, 봉화, 영덕, 영양, 청송) - 전남(진도)		<ul> <li>경남(거창, 고성, 남해, 산청, 창녕, 하동, 함양, 합천)</li> <li>*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은 추후사용가능</li> </ul>
사 용 처	교통	- 버스, 고속버스(김해시 제외), 시티투어버스(서울·제주), 공항 리무진(인천국제공항↔서울/ 경기, 인천권 운행) - 지하철(김해 경전철제외) - 기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누리로 등) - 공항철도 - 택시(서울, 울산)	- 지하철(서울 1~9호선, 부산	- 지하철(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구	분	레일플러스 <b>R</b> ail+	원패스 Onepass:=	캐시비 😁
사 용 처	가 맹점	- 편의점(emart24, story way) - 유통점(KTX 열차 내 유인이동 판매대, 역사 내카페스토리 웨이), 유통전문점(일부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 코레일 역사 내 브랜드매장(카페, 음식점, 잡화 등 600여개) - 제휴가맹(레일플러스 스티커 부착 제휴가맹점) - 전국 우리은행, 농협, 롯데(세븐 일레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등)	- 편의섬(전국 emart24, 대구· 경북지역 GS25, 세븐일레븐 대구·경북 전 지점)	- 편의점(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CU, 미니스톱, GS25) - 유통점(롯데마트, 롯데슈퍼, 롭스) - 엔터테인먼트(롯데시네마, 메가박스) - 식음료(롯데리아, 엔제리너스 커피, 크리스피크림도넛, 파리 바게트(롯데계열),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파스쿠치, 잠바 주스, 빚은, 오봉도시락, 밀크밥 버거, 커피앳웍스(SPC계열)) - 기타(주차장, 자판기, 구내식당, 사직야구장, 음식물종량제 등)
충전	시설	- 지하철 내 충전기 및 발매기 - 편의점(storyway, emart24) - 우리은행·농협·롯데 ATM * 농협 ATM은 농협계좌이체 충전만	- 대구은행ATM, 대구도시철도역사, 가두판매점(대구) - 편의점 (emart24-전국, GS25, 세븐일레븐-대구·경북) - 교통카드 판매/충전소 마크가부착된 토큰판매소 및 가맹점	CU, 미니스톱, GS25, emart24) - 수도권/부산지하철 무인충전기 (대구지하철 무인충전X) - 전국 캐시비 충전소, 롯데슈퍼 (일부), 롯데ATM(CD기 제외)
		※소급하여 소득공제 신청 불가하드	그로 사전에 소득공제 신청 필요	
	·공제 .청	- 홈페이지, 어플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 메뉴→할인카드 등록 → 소득공제 체크 후 개인정보 입력	-홈페이지 회원 및 비회원 등록 절차 중 소득공제 신청여부 선택가능	- 신규회원: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 선택 - 기존회원:[내 정보수정] 통해 신청 가능
할인	등록	- 홈페이지 또는 R+어플 → 카드 등록 → 할인카드등록 → 카드 번호입력 및 생년월일 입력 ※ 최초 사용(결제) 후 10일 내 반드시 할인등록 필요 (미등록시 일반요금 전환) ※ 시스템 할인등록기간(최대 5일) 동안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은 청소년 요금 징구 필요	- 홈페이지 → 청소년·어린이 할인 카드 등록 → 회원 혹은 비회원 등록 선택 → 본인인증 → 교통 카드번호 입력 → 등록완료 ※ 최초충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카드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일 경과일로부터 성인요금 차감 ※ 청소년(만 13~18세) 등록 시 유의사항	- 세븐일레븐 / CU / GS25편의점에서 생년월일 등록 → 할인 요금적용(통합권종카드 표기 카드) ** 내역조회 및 소득공제 필요 시 홈페이지 가입 후 카드등록 및 소득공제 신청

구 분	레일플러스 <b>Rail+</b>	원패스 Onepass	캐시비 cosh		
		- 등록일 기준 최대 +3일 이후 청소년요금 적용 - 등록일 기준 3일내 대중교통 이용 시, 단말기 조작 필요 (지하철 불가) ※ 카드 허위등록 및 악용으로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카드 등록자에게 있으며,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승차구간 운임요금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			
	※ 분실/도난 시 환불 불가				
환불 신청	- 전국 코레일 역사(전국기차역, 코레일운영전철), 우리은행ATM(계좌보유시) ※ 20만원 이하에 한하여 현장에서 잔액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20만원 초과 및 훼손카드는 역 방문 반환접수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반환접수 가능	- 전국 대구은행, 전국 emart24, 대구·경북지역 GS25 ※ 카드실물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카드 고장 및 훼손의 경우 제휴 편의점(GS25, emart24)에서만 가능하며, 편의점 내 비치된 환불 봉투를 통해 접수가능	- 캐시비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 주요 편의점(일부 매장 제외) ※ 2만원 미만에 한하여 잔액 환불 가능 (환불수수료500원) ※ 신한은행 ATM, 우리은행 ATM: 잔액 50만원 이하(계좌 보유시) 환불 가능(환불수수료 500원) ※ 홈페이지 → 카드잔액 환불 → 환불 봉투 온라인 다운로드를 통해 직접 환불접수 가능		
특별혜택	-철도승차권 구입 시 KTX 마일리지 1% 추가 적립	-	- 가맹점별 할인 프로모션 시행 여부에 따라 상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이벤트 확인		
콜센터	1544-7788(내선 5)	080-427-2342	1644-0006		
홈페이지	http://railplus.korail.com	http://www.dgbupay.com	http://www.cashbee.co.kr		
사업자명	코레일네트웍스(주)	㈜DGB유페이	㈜이비카드		

- \* 제휴 가맹점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 \* 위 표에 명시된 사용처는 교통카드 충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등을 의미하며, 결제 시 청소년 할인 적용 여부와 별개임

-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신청'에 체크하고 3개 교통카드 중 원하는 교통카드명 기재
    - **※ 사용가능지역, 사용처 등** '나. 교통카드별 주요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여 청소년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필요
    - ※ 카드종류별 사용불가 지역을 확인하여 교통카드 기능 추가 여부 등 안내
-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청소년증을 원하는 경우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의 교통카드 기능 '미신청'에 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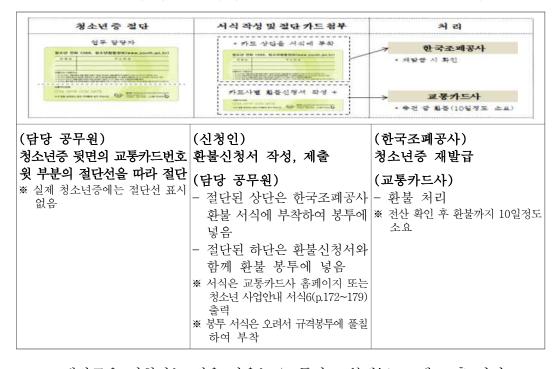
### 다. 환불 신청

- 도난/분실
  - 선불형 교통카드 도난/분실은 현금 분실과 동일하므로, 교통카드사 정책에 따라 잔액 환불처리 불가능(카드 뒷면 이용안내에 표기)
- 정상카드 환불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 카드로 이사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잔액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 '나. 교통카드별 주요내용'의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이 신청
  - 화불수수료 발생
    - ※ 자세한 내용은 교통카드사별 홈페이지 및 안내전화 참고

### 라. 칩 불량카드 화불 처리

- ※ 외형 훼손 여부와 관계 없이 칩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카드 환불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소년증 교통카드의 특성상 주민센터에서 처리 원칙

①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인 경우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재발급비 처리: 칩 불량 청소년증(1년 이내) 재발급비는 신청 시·군·구청에 청구되지 않음
  - ※ 청소년증 상단은 반드시 한국조폐공사로 반납해야하며, 우송료는 기존과 동일
- ②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청소년증 앞면 발급일자 기준)된 경우
  - 청소년증 절단 후 하단만 교통카드사로 송부, 상단은 주민센터에서 파기
  -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유는 '교통카드 불량'으로 체크 후 처리
  - 발급한 지 1년이 경과된 경우이므로 발급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 절단 방법 등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와 동일
  - < 일반 환불처에서 칩 불량 청소년증을 교통카드사로 잘못 발송한 경우 >
    - ㅇ 청소년증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해당 청소년증이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화불신청서에 따른 화불처리 및 한국조폐공사로 상단 전송
      -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교통카드사는 청소년증 절단 후 환불신청서에 따른 환불처리 및 주소지 주민센터로 상단 전송

### 붙임 1 서 식

서식번호	서 식 명
서식 제1호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서식 제2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서식 제3호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철회신청서
서식 제4호	청소년증 발급대장
서식 제5호	청소년증
서식 제6호	환불서식(환불신청서, 환불봉투)
서식 제7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用)

### [서식 제1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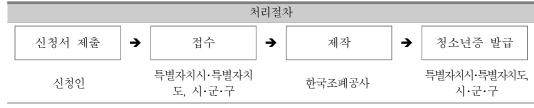
(앞쪽)

### 천소녀주 (개)반극시처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Γ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u> </u>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소					
(본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초·중·고 제	학 중 [ ]초·중	·고 재학하지 않음	[ ]고등학	교 졸업	
	신청구분	[ ]신규 [ ]재발급([ ]분실	[]훼손 []기타)			
신청내용	수령방법		[ ]등기우편		사진	
	등기우편 수령 주소	(우 )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교통카드 기능	[ ]신청: 종류(	)	[ ]신청하지 않음		되고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대리 신청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내용은 사실이며, 「5   (재)발급을 신청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저	ll2조제1항·제4조제1항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	E지사·시장·급	구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뒤쪽 참조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m²]

	신청인
첨부서류	1. 사진 1매(앞쪽의 사진란에 붙여 제출합니다) 2. 청소년증(청소년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l.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목적 : 청소년증 발급 및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이용기간 : 19세가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

- 제공기관: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기관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 1. 청소년증의 (재)발급 신청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재)발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4.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5.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적은 주소로 청소년증이 발송되므로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 6.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란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청소년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최초 발송한 날부터 5일 이내에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청소년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청소년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 7.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1년 이내에 청소년증을 찾아가기 바라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청소년증은 파기됩니다.
- 8.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교통카드의 종류를 적습니다.
- 9.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0.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 분실한 청소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되찾은 청소년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 [서식 제2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 진	성 명		
사 진 (3.5cm×4.5cm)	주민등록번호		
간	주 소		
인	T 2		
반근시처인자		반근바ㅎ	유하기가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년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 ※ 발급 시 유의사항

이 확인서는 전산조직으로 출력하여 발급하거나 본 서식에 사진을 붙인 후 발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사진을 포함한 인적사항·발급번호·유효기간은 투명스티커를 덧붙여야 합니다.

#### ※ 이용자 유의사항

- 1.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며, 청소년증 발급통보를 받으면 청소년증을 별도로 수렁해야 합니다.
- 2. 유효기간은 이 확인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며 청소년증을 발급받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반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3. 이 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증 발급기관(☎ – )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식 제3호]

### 청소년증 [ ]분실신고서 [ ]철회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u>'</u>					
	성명			분실자와의	관계		
신고(철회)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						
분실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분실일자	장소					
신고(철회)내용	분실(철회) 사유						
ニー・コフム	<b>入</b> ピ						_
청소년증의	- 습득 	년	월	일			
위와 간이 첫	소년증의 분실을 신고(분실신고를 칠	최회)하니디	ļ.				
11 1 E 1 0		년 년	). 월	일			
		신고(침	널회)인		(서대	경 또는	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	료
						없음	î
	유의시	- 항					

- 1. 이 신고서는 청소년증 분실신고만 할 때 사용하시고, 청소년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 2. 분실자가 직접 신고할 때에는 '신고(철회)인'란은 적지 않으며, "청소년증의 습득"란은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는 난이므로 신고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3. 분실된 청소년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철회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바랍니다.

### [서식 제4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청소년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일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유효기한	교부일 (인)	비 고 (재발급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m²]

### [서식 제5호]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7. 14.>

	(앞쪽)
	청 소 년 증
사진 (2.5cm×	イー・   イー・
OO	(도) ○○시장(군수·구청장) <sup>직인</sup>
	86mm×54mm(플라스틱(PVC))
	(뒤쪽)
연월일	주소 변동 사항

### [서식 제6호]

- 화불서식(화불신청서, 화불봉투)
  - 레일플러스 화불신청서



### ○ 레일플러스 - 환불봉투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6.2.2 ~ 무기한 세울중앙우체국	받는 사람  전국호환 선물 교통카드 <b>구시하 서울시 중구 청파로 426 철도빌딩 6층 611호</b> 레일플러스카드 반환 담당자 앞  0 4 5 0 9
보내는 사람 (반드시 카드와 신청서를 넣어주세요	

### ○ 원패스 - 환불신청서

#### DGB유페이 환불 신청서

(우편 발송용)

#### ■ 카드 실물이 동봉되지 않은 환불 신청은 처리가 불가 합니다.

####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기재 예상잔액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기타( )					
성 명	연락처					
환불계좌	환불계좌     아래 기재하신 환불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 불가)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본인은 환불 신청 시 주의사항 및 환불 규정 안내를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인/서명)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22조에 따라 본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본인확인, 환불처리, 환불관련 고객민원처리, 카드반송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의 내용 : 카드번호, 고객명, 연락처, 은행명,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처리 (단, 민원 분쟁 소지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보존)
  - 보존기간 : 환불금액 1만원 이하일 경우 1년, 1만원 초과일 경우 5년
  - 보존사유 : 환불금액 정산 및 고객민원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소송 등 기타 필요한 경우 대비
  - 파기절차 : 보존기간 만료 시 카드실물 및 신청서는 DGB유페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 처리

본 신청인은 작성한 개인정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보유에 동의합니다.

본 신청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성명: (인/서명)

------ 절 취 선 -------

### DGB유페이 환불 신청서

(고객보관용)

#### ■ 환불 완료 시까지 반드시 보관 바랍니다.

#### ■ 신청 정보

카드번호	필수기재	발송일자	20	년	월	일
카드상태	□ 인식불가 □ 파손 □ 일부 교통 사용 불가 [	] 기타(	)			

#### ■ 주의사항 및 환불규정 안내

- 분실, 도난, 습득카드는 환불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원패스카드 외 타사카드는 접수 시 기재하신 주소로 반송 처리됩니다.
- 고객보관용 신청서는 환불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배송 및 기타 문제 발생 시 고객보관용 신청서가 없을 시 환불처리가 불가 합니다.)
- 현금환불 및 카드 재충전 환불은 불가 합니다.
- 기입하신 예상잔액과 실제 환불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불신청 접수 후 D+10 영업일 이내 등록한 환불계좌로 카드 잔액 환불처리됩니다.

#### ■ 홈페이지 및 문의처 안내

- 홈페이지 : www.dgbupay.com
- 고객센터 : 080-427-234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 문서는 DGB유페이의 문서로 목적 외의 사용을 금합니다.

1603001/마케팅팅/감도연/2016.11.30 10:36

### ○ 원패스 - 환불봉투

### ■ DGB유페이 환불신청 봉투 라벨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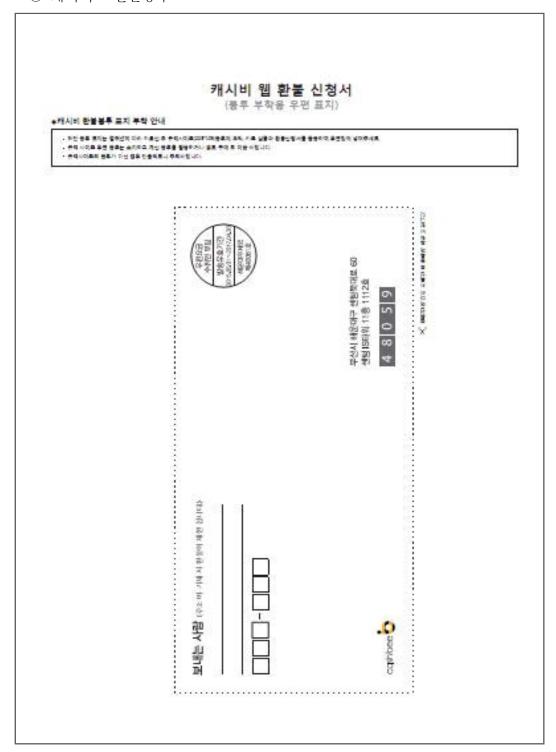
4203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 범어동 223-5 동일빌딩 9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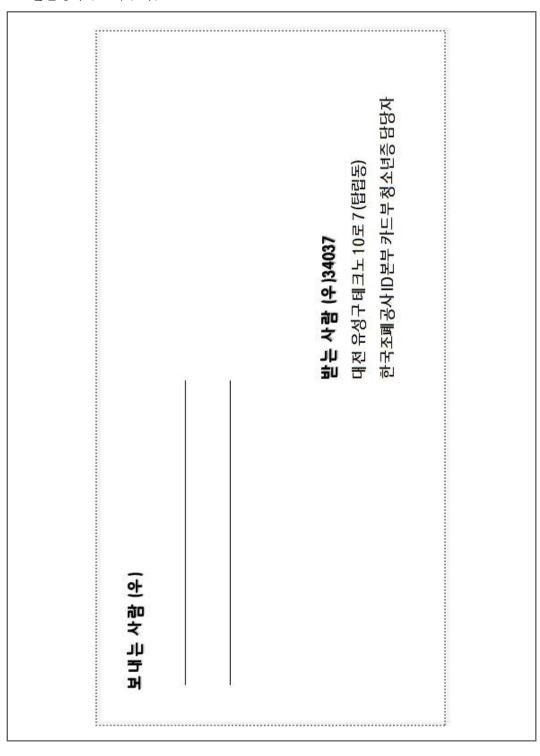
신설



[환불접수증 - 고객보관용] 환불금 입금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꼭 보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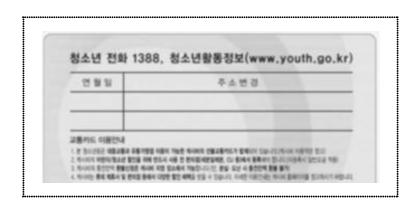
### ○ 캐시비 - 환불봉투





### [조폐공사\_카드반납]

### 칩불량카드 실물 반납(한국조폐공사)



- 발급일(앞면) 기준 1년 이내 카드
- 카드 실물 투명테이프 부착(교통카드번호 윗부분)

### [서식 제7호]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4세 미만 청소년 법정대리인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정보 처리의 제한) 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이용 및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o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ㅇ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초·중·고 재학 및 졸업 여부, 발급 신청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교통카드 기능 신청 여부 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ㅇ 청소년증 발급 관련 본인 확인 및 제작, 수령 등에 관한 업무
- ㅇ 청소년증 제도개선,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자료 처리 등
- 0 기타 청소년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통계 자료 생산 등 업무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ㅇ 위 개인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후 해당 청소년이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ㅇ 위 내용은 청소년증 발급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ㅇ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절차
- 청소년증 적정 이용 관리업무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o 본 기관은 청소년증 발급 지원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증 발급 및 등기 발송 업무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 \* 본 정보는 청소년증 발급 및 복지지원을 위해 한국조폐공사, 우정사업본부(우체국)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현황(2003~2023)

(단위:건)

	2003년									간위 : 선 <i>)</i>
구분	(시범)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515	11,848	14,120	12,478	24,455	30,265	33,656	36,244	40,898	43,543
서 울	436	1,515	1,781	4,355	6,975	8,251	8,480	8,949	9,992	10,633
부 산	_	381	672	971	1,724	2,198	2,492	2,399	2,868	2,944
대구	_	181	214	580	1,754	1,905	2,212	2,069	2,304	2,216
인 천	_	751	353	640	1,676	2,464	2,216	2,527	2,642	2,916
광 주	_	282	61	110	318	416	509	576	813	1,025
대 전	66	103	287	304	607	853	917	944	885	1,044
울 산	_	86	105	220	640	844	897	950	1,060	1,180
세 종	_	-	-	_	_	_	-	_	_	32
경 기	_	4,381	1,966	2,894	6,243	7,477	8,863	9,892	11,007	11,232
강 원	13	148	85	341	428	566	835	908	1,071	1,173
충북	_	648	995	350	479	614	845	913	1,129	1,206
충 남	_	311	4,275	368	855	720	765	889	1,205	1,244
전 북	_	1,266	450	164	498	1,027	1,066	1,226	1,437	1,506
전 남	_	244	175	141	390	499	616	624	718	896
경 북	_	521	1,597	486	810	1,048	1,229	1,369	1,438	1,663
경 남	_	983	677	418	893	1,165	1,440	1,738	2,008	2,326
제 주	_	47	427	136	165	218	274	271	321	307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49,438	50,663	93,536	114,250	188,562	165,408	142,502	182,644	153,547	169,190	149,856
서 울	10,624	9,779	9,619	9,786	13,609	11,395	13,122	15,155	15,694	17,883	17,052
부 산	3,202	3,174	3,899	6,326	11,890	6,432	11,704	9,332	10,664	8,090	6,823
대구	2,573	3,006	3,406	2,939	8,616	9,225	10,514	6,291	5,392	6,414	5,910
인 천	3,012	3,126	3,828	3,223	5,180	4,001	4,683	7,801	6,000	5,837	6,311
광 주	1,215	1,561	1,899	1,779	6,037	8,891	4,399	5,487	4,826	6,286	6,100
대 전	1,446	1,447	2,403	1,636	4,646	5,913	4,887	6,779	6,870	7,461	6,739
울 산	1,590	1,243	2,490	1,424	3,791	4,125	1,964	2,071	1,931	3,182	2,517
세 종	110	99	473	1,434	2,460	3,381	2,918	3,798	3,318	3,554	3,012
경 기	12,555	12,737	24,187	39,839	63,327	34,855	38,722	60,701	51,419	57,661	44,578
강 원	1,773	1,704	3,585	5,899	9,626	8,921	4,840	6,572	4,338	4,994	4,835
충북	1,362	1,306	2,519	1,771	3,631	2,648	3,276	6,646	5,560	5,571	6,143
충 남	1,733	1,701	3,488	5,008	9,181	6,290	4,808	8,617	8,506	5,649	5,369
전 북	1,776	1,942	3,407	4,630	9,203	11,406	8,428	8,280	5,990	7,900	8,011
전 남	1,130	1,362	4,143	5,682	7,248	11,769	5,272	8,963	5,610	5,722	7,349
경 북	1,935	2,334	14,179	10,816	12,676	17,885	12,220	10,494	6,788	11,073	7,981
경 남	2,906	3,640	8,253	10,595	14,134	15,475	8,781	13,621	8,355	9,507	9,037
제주	496	502	1,758	1,463	3,307	2,796	1,964	2,036	2,286	2,406	2,069

\* 출처: 한국조폐공사(2003~200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2010~)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안내

### 1. 목 적

청소년증 신청 접수 후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청소년 편의 증진 제고(한국조폐공사 개발)

- 2. 서비스 대상: 청소년증 신청인 중 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자
- 3. 시행일자 : 2008. 8. 1.
- 4. 서비스 내용
  - 청소년증 발급 진행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SMS) 2회 발송
    -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에 실시간 조회사이트(www.komsco.com) 설치·운영 (조폐공사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카드발급조회)

#### <문자메시지 예시>

- ① 접수 직후
  - 「○○○님의 청소년증, ○월○일 한국조폐공사에 접수됨

www.komsco.com 검색가능」

② 배송 직후

「○○○님의 청소년증, ○월○일 시군구로 발송함 5일 후 수령가능 - 한국조폐공사」

#### 5. 협조사항

- 청소년증 신청자가 발급 진행 문자메시지(SMS) 수신을 원할 경우
  - 읍·면·동 청소년증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 / 청소년증 신청 및 교부 내역등록」의 신청자정보(HP)에 신청자 휴대폰 번호 입력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한국조폐공사 콜 센터(1577-4321) 문의

# 》 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 사업

### □ 정산 방법

- 입금기한: 접수 후 즉시 입금 원칙 \* 편의상 익월 5일까지 입금 가능
- 지정계좌: 우체국 312884-01-006047(예금주: 대전대덕우체국장)
- 입금자명: (읍/면/동)+청소년이름으로 입금 \* 7자 이내
  - ※ (예시) 문평동(홍길동), 중앙동김나래, 신림10동김철수
  - \* 동명이 긴 경우에도 7자까지 입력하면 우체국 담당자가 최대한 확인 및 연락 예정

### < 입금자명 오류발생 주요 사례 >

연번	입금자명	처리불가 사유	비고
1	충북 충주시, 광주 북구	정확한 접수동 확인 불가	회계부서 입금시 동명이
2	중앙동, 태화동	중복지역 다수 존재	생략되므로 우체국
3	홍길동 (주민센터장, 담당자 이름 등)	접수기관 확인 불가	담당자와 유선협의 필요 (☎ 042-930-2412)

- 입금단위 : **신청건별 입금** \* 신청자 확인을 위해 건별 입금 필요
  - ※ (예시) 중앙동에서 3명(김영희, 이철수, 박진희)이 등기수령을 신청한 경우
    - → 중앙동(김영희)/ 중앙동(이철수)/ 중앙동(박진희)로 각각 3,820원씩 3건 입금
    - \* 온라인(복지로)으로 청소년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등기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카드결제 대금이 우정사업본부로 바로 이체되므로 별도 정산 불필요
    - ☞ 카드 결제 시 등기비용(3.820원)에 카드결제수수료(200원)가 추가로 부과됨

### □ 유의사항

- **회계부서에서 일괄 입금**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명이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회계부서와 협의하여 (읍/면/동) + 청소년이름으로 입금되도록 처리
  - 입금자명 정정이 어려운 경우 입금 후 우체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입금 내역 등 확인 필요
     (대전대덕우체국 영업과 ☎042-930-2412)
    - ※ (예시) 진주시 ○○동 회계부서 입금 시 '경남 진주시'만 표기되어 확인 불가
- 등기비용 처리 과정에서 청소년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담당자 인사 이동 또는 부재 시 **인수인계 및 대무자 지정 등 철저**
- 우편요금 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정산기한 준수
- 등기비용 정산 후 별도 **공문 발송 불필요**